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민권리선언포럼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

-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서 농민의 참여와 권리 -

- 일시: 2021. 9. 2.(목) 14:00~16:30
- 장소: 괴산 사리복지회관 세미나실(충북 괴산군)

토론회 순서

구분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4:00~14:10	10	○ 개회: 김정열(포럼 대표)	사회: 송원규 간사
주제 발표	14:10~14:30	20	○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김기형 회장 (진천군농민회)
	14:30~14:50	20	○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송요일공동대책위원장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정리	14:50~15:00	10	휴식	
토론 질의 응답	15:00~16:1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구점숙 위원장(경상남도 농특위 농어민인권분과) ○ 지정토론(30분): 하승수 대표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분) 괴산군 경제과 진천군 투자전략실 ○ 현장토론(45분): 포럼 참석자 	
폐회	16:15~16:30	15	○ 종합정리 및 폐회	좌장 및 사회

자료집 목차

토론회 순서	1
자료집 목차	3
주제발표 1	5
주제발표 2	13
지정토론 1	31
지정토론 2	33
지정토론 3	35
부록	37

주제발표 1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김기형 진천군농민회 회장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김기형 진천군농민회 회장

1. 들어가며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는 전체 마을주민이 20여명밖에 되지않는 작은 시골마을에 한바탕 휘오리바람을 몰고 지나갔다. 제일 젊은사람이 50대 중반, 대부분 70~80이고 93세의 고령 할머니께서 아직도 눈에 물고도 보고 작은 밭농사도 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이다. 처음 산업단지가 발표되었을 때 다들 불안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걱정이었지만 이내 이장과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해내고 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평생 고되게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께서 이참에 농사일 정리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서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게 이어온 농사일이지만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삶터와 일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가슴깊이 절절하다는 것을 느꼈다.

고향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그 터전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은 그 어떤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들이었다.

2.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진천 테트로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2024
- 사업비 : 1,500억원
- 면적 : 774,015평방미터(23.4만평)
- 시행자 : SPC(진천군 20%, (주)태영건설외 2개사 80%)

2) 추진상황

- 2019. 01 :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20. 0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금강유역환경청)

- 2020. 0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 2020. 09 : 사업구역 축소 후 농지관련협의 요청
- 2021. 01 : 충청북도.진천군.(주)태영건설 MOU협의

3. 마을 주민들의 대응

산업단지가 이야기된 것은 2018년도 쯤인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군수면담, 주민설명회 저지, 마을대책위원회 구성, 한달간 군청 앞 일인시위, 시내 및 마을주변 프랭카드 게첩,농림부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그럴 때마다 마을 회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정리해 왔다.

2019년 농림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결론나는 듯 했으나 일부 사업구역 및 고 농지축소를 바탕으로 농림부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그간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업체의 회유가 끈질기게 진행되어왔음에도 주민들이 한치의 흔들림없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개별적 대응을 자제하고 동네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 그 어떠한 소문과 악선전도 서로에 대한 신뢰로 극복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분들의 군청앞 1인시위 및 선전물게시>>





4. 무엇이 문제인가

1)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훼손은 절대 안 된다.

산업단지 조성지의 전체면적은 774,015평방미터(23.4만평)이며 이 중에서 농지면적이 328,225평방미터(9.9만평)이다. 더구나 이 농지 모두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 지정해놓은 지역이며 따라서 농업의 진흥을 위해 타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먼저 202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를 보자

<<202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

□ 2020년 경지면적은 1,565천ha로 2019년 1,581천ha보다 16천ha(-1.0%) 감소

○ 논 면적은 824천ha로 2019년 830천ha보다 6천ha(-0.7%) 감소

- 논 비율은 52.7%로 2019년 52.5%보다 0.2%p 증가

○ 밭 면적은 741천ha로 2019년 751천ha보다 11천ha(-1.4%) 감소

- 밭 비율은 47.3%로 2019년 47.5%보다 0.2%p 감소

< 연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 추이 >

(단위: 천ha, %)

		'07	'08	'09	'10	'11	'12	'13	'14
경지면적	논	1,070	1,046	1,010	984	960	966	964	934
	밭	712	713	727	731	738	764	748	757
	계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1,711	1,691
증감률		-1.0	-1.3	-1.3	-1.2	-1.0	-	-1.1	-1.2

		'15	'16	'17	'18	'19	'20
경지면적	논	908	896	865	844	830	824
	밭	771	748	756	751	751	741
	계	1,679	1,644	1,621	1,596	1,581	1,565
증감률		-0.7	-2.1	-1.4	-1.6	-0.9	-1.0

이처럼 해마다 1% 이상의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지의 감소는 식량자급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세를 보면

<표>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단위 : %)

연도	전 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0	27.6	104.5	24.7	0.9	0.9	10.1	98.7	10
'11	24.3	83.1	22.5	1	0.9	8	96.9	8.7
'12	23.7	86.6	16.5	0.7	0.9	10.4	95.8	10
'13	23.3	89.2	19.3	0.4	1	9.7	96.3	11.1
'14	24	95.4	24.8	0.6	0.8	11.3	96.1	11.2
'15	23.9	101	21.9	0.7	0.8	9.4	94.6	11.8
'16	23.7	102.5	23.3	0.9	0.8	7	94.8	11.9
'17p	23.4	94.5	24.9	0.9	0.8	5.4	95.2	9.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표에서 확인되듯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통계는 21%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8%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농지가 162만 ha이다. 정부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지전용 및 훼손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농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 농지분포로 볼 때 논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식량자급률이나 식량주권의 측면에서 그리고 통일농업을 위해서 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농지전용에 앞장서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농지위에 산단개발은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이다.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농업을 위해 개발된 지역인 것이다.

2)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슨 권리로 빼앗는가?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있는 가구는 대략 10여가구이며 자연마을로 1개 마을이다. 대부분 수십년째 농사를 지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외지로 나가 생활하시다가 고향이 그리워 귀향하신 분들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일

구어온 터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나머지 삶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 모두가 한 식구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누가 무슨 권리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3) 산단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은 기업에 대한 특혜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상식이다. 또한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농업 생산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농지는 재산축적의 도구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을초 LH직원들의 농지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은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원칙하에 전면적인 농지제도 개선 및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는 식량주권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성으로 정부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며 농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순간 농지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따라서 산단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특혜인 것이다. 이러한 특혜가 보장되는 한 농지훼손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한 이러한 특혜를 거두어야 한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소박한 소망은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

진천 테크노 폴리스 산업단예정지인 이월면 사당리 일원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을 배경으로 뒤로는 야산이 자리하고 동남향의 앞으로는 하천을 배경으로 농지가 분포되어있다. 농촌 마을의 전형이다. 혹자는 농촌소멸의 위기를 각종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가히 엽기적 발상이다. 이는 농촌해체를 가속화할 뿐이다. 농업소득의 보전과 각종 교육·문화·교통·여가 시설 등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성만을 따져서 산을 밀어내고 농지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리적 환경과 적정 농지를 배경으로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삶터를 지켜내는 것, 농민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식량권을 지켜낸 위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 따라서 마을을 지켜내고, 농지를 지켜내고, 농민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민들의 권리이어야 한다.

주제발표 2

농촌지역 내 산업단지를 빙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 사례발표

송요일 괴산폐가산단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백지화를 촉구하며

농촌지역내 산업단지를 빙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 사례발표

- 농지훼손, 주민생존권 위협, 환경파괴 -

송요일 괴산메가산단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1. 사업추진배경

□ 2018년 충청도지사는 도내 연간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 괴산군수는 임기동안 60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군수 공약이 있었음.

※ 현 괴산군수는 충청도청 비서실장, 경제통상국장 등 현 도지사와 8년간 직장동료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상지 선정은 먼저, 업체들이 11개 읍면을 사전조사한 결과 괴산군에서 입지선정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축사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사리면을 대상지로 물색함. 업체들의 제안으로 의회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됨.

□ 2019년 괴산에 연고가 있는 지역건설업체 토우건설과 SK건설이 민관협동방식으로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됨.

※ 토우건설과 SK건설은 이미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음성성본산업단지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토우는 괴산첨단산업단지에도 시공사로 참여를 했으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

⇒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괴산군의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과 사리면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공략하여 요즘 돈벌이의 대세인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내용은 숨겨둔 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2. 현황

1) 괴산군

□ 괴산군 2020년 기준 인구 3만 7천여 명이며, 전체 가구의 43%가 농가이며 전체 면적의 74%가 임야이며, 논밭이 16%를 차지함. 주요 농산물은 고추,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등이며 전형적인 농업군임.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촌지역 그러하듯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음.

□ 2012년도 전국 최초 유기농업군 괴산 선포, 2013년도 유기농특화도 충북 선포식을 괴산에서 개최했으며, 2015년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유치하여 유기농업군으로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괴산군 신규 농산물 브랜드 “순정농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괴산군 광고비 중 80%가 농업관련 광고임.

“괴산군은 올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친환경 유기농업도시’ 부문 대상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년 9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연다. 2015년에 이어 충북도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과 함께 여는 국제 유기농 행사다. 이차영 군수는 “내년 행사는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전 세계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K오가닉의 확산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28일, 동아일보)

□ 괴산군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 7.3%로 충북 최하위, 2020년도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지표 등 분석한 결과 -0.162로 충북에서 꼴찌임.(나라살림연구소 발행)

□ 괴산군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3개소가 있음. 괴산첨단산업단지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1개 업체를 유치했음. 대제산업단지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분양함. 실제 입주업체 가동율은 50%가 안 됨.

※ 농공단지의 경우 2개소는 20년 이전에 농공단지 지정이 되었으며, 농공단지만 본다면 미분양율이 31%에 달함.

〈표〉 괴산군 산업단지현황

단지명	면적	분양면적	미분양율	입주업체	시행자	완료연도
괴산첨단산업단지	14만평	9만2천평	6.2	1개소	괴산군	조성중
괴산대제산업단지	26만평	18만2천평	0	17개(10만평)	민관합동	2016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24만평	6만평	0	2개소	아이쿱	조성중
충청북도수산물식품산업단지	2만3천평	3천평	0	-	충청북도	2019
괴산농공단지	1만7천평	1만3천평	0	6개소	괴산군	1989
사리농공단지	3만4천평	2만8천평	0	10개소	괴산군	1988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9만7천평	6만8천평	31	12개소	괴산군	2016
계	81만1천평	44만6천평	18	48		

⇒ 민선 이후 모든 괴산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되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친 군수가 단 한 명도 없음.

□ 충청북도 산업단지는 지정면적 지정 면적 2,592만평, 분양면적 1,762만평, 미양면적 39만평(충주, 음성)임. 충북의 연간수요대비해서 가능한 산업단지 공급을 4배로 산업단지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음.

〈표〉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2021년 6월말 현재

(단위 : m², %)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28	85,529,837	58,162,296	46,671,452	45,692,206	979,246	2.1
국가	2	9,011,470	5,011,756	4,846,352	4,846,352	0	0.0
일반	80	69,911,533	47,742,394	36,551,274	35,632,878	918,396	2.5
도시첨단	2	272,276	194,834	194,834	194,834	0	0.0
농공	44	6,334,558	5,213,312	5,078,992	5,018,142	60,850	1.2

〈표〉 충청북도 연간수요대비 산업단지면적

구분	연간수요		개발중 및 미분양면적				대비 (b/a)
	고시번호(일자)	수요면적 (a)	계 (b=c+d-e)	개발중 [미공고] (c)	미분양 (d)	개발중제 외 (e)	
충북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031호 (2018-12-31)	2,015	8,014	7,199	814	0	4.0

2) 사리면

- 사리면은 괴산군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문광면, 서는 증평군, 남은 청안면 북은 음성 원남면에 인접하고 있음. 면 중앙부에 소백산맥의 보광산(모래재)이 남북으로 위치하여 분수령을 이루고 있고 동부는 산악지대로 전이 많고 평야지로는 답이 많음.
-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지방도로 청주, 충주등에서 20분거리, 증평IC, 음성IC 등도 가까워 괴산지역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음.
- 사리면은 8개의 법정리와 27개 마을로 구성되며, 가구수는 1,557가구이며 총 인구는 2,731명임. 농업이 중심이며, 축산업 및 사리농공단지, 사업체등 공업 종사자도 있음.
- 사리면은 괴산군에서 기업체가 가장 많으며, 주소득원으로는 고추, 옥수수, 배추, 인삼, 벼, 축산, 한우 등이 있음. 사리면 농지는 논이 166만평, 밭이 147만평, 과수원이 2만평, 기타 95만평 등임.

3) 대상지 주변 마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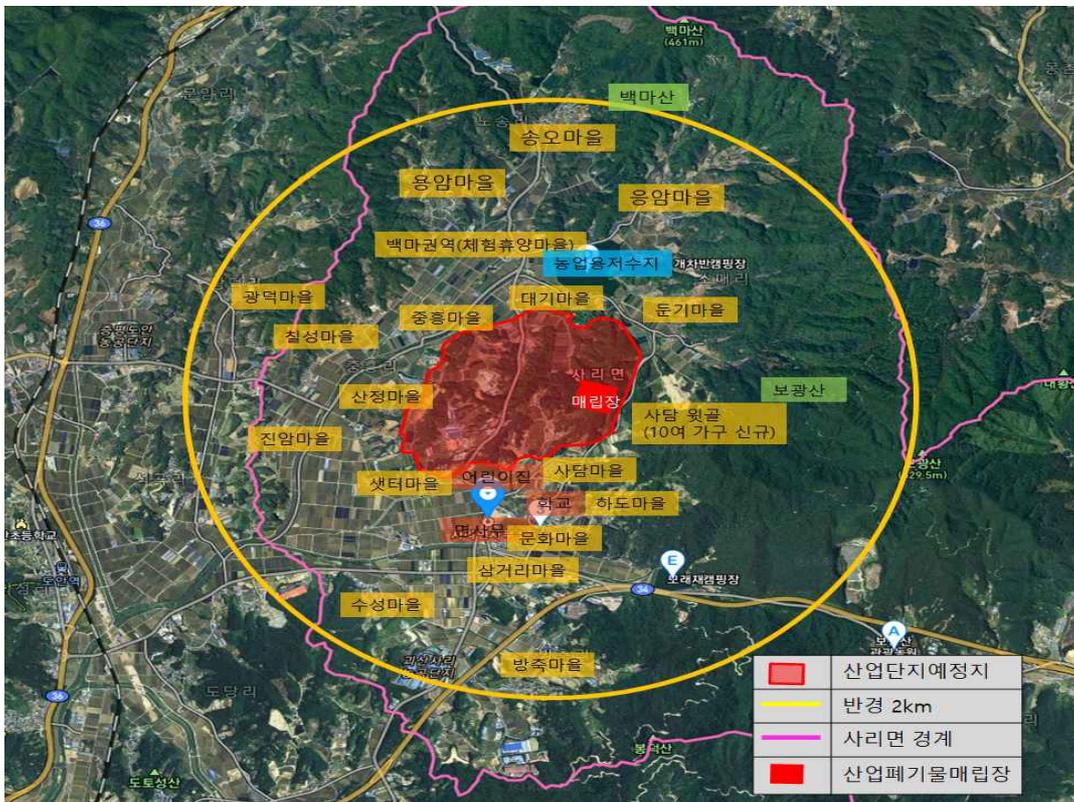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대상지는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등 3개의 법정리에 5개 마을이 포함되며, 인구 약 1,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25년간 약취로 민원이 발생하는 퇴비공장 농협 흙사랑과 1만 5천두의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사육하는 엘디팜영농조합법인, 그 외 양돈농가 3가구가 있음.
- 대상지 반경 2km 주변에는 17개의 마을이 있으며, 인구는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농지 260만평에 벼와 배추, 고추, 옥수수 등을 주로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음.
- 대상지 바로 옆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고, 증평 보강천의 발원지인 보광산과 백마산이 있으며, 옛 초등학교 자리에는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백마권역 활성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산업단지 남쪽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음.
- 산업단지로 편입될 토지를 살펴보면, 전체 50.6%가 임야로 8개 성씨의 종중의 선산으로 1천여기가 넘는 묘지를 포함하고 있음, 전체 37.1%인 20만평이 논밭이며, 이중 11%가 절대농지임. 편입예정인 20만평의 농지는 대부분 임

차농임.

<표> 산업단지 예정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합계	전	답	대	도	임	구	기타
면적(m ²)	1,775,937	389,633	271,230	14,087	52,398	899,146	40699	111,744
구성비(%)	100.0	21.8	15.3	0.8	2.9	50.6	2.3	6.3

□ 산업단지안의 주요 시설물로는 기업형 양돈업체 1개소, 양돈 농가 3개소, 연간 68억의 매출을 올리는 유기질 퇴비공장이 위치해 있음. 양돈장과 퇴비공장으로 인해 약 25년 동안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아 오고 있음.



2) 괴산메가폴리산업단지 추진현황

□ 추진 경과

- 2019. 10 : 양해각서 체결(충북, 괴산군, sk건설(주), 토우건설(주))
- 2020. 02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괴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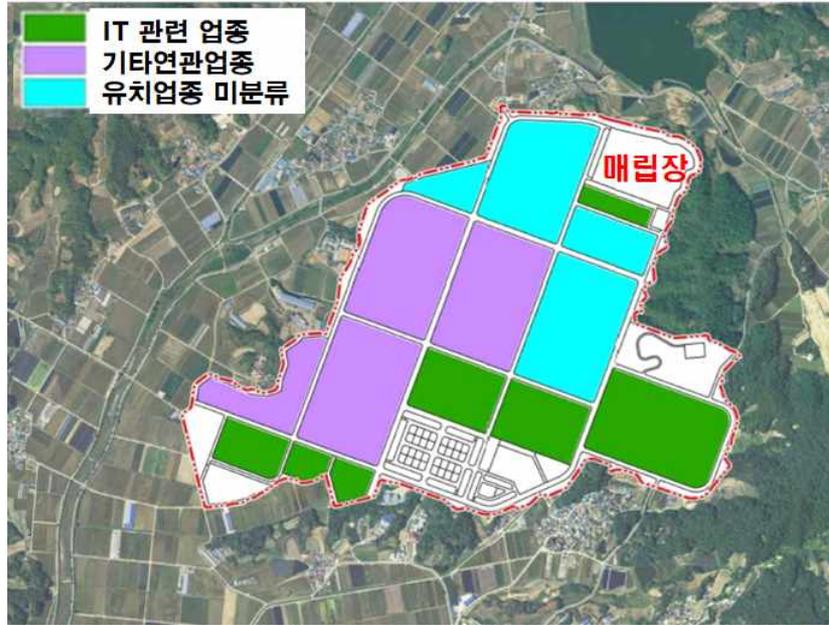
- 2020. 03 : 공동사업협약 체결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
- 2020. 12 :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심의(서면)
- 2021. 02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 03 :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
- 2021. 03.22 : 산업단지승인에 필요한 토지편입승락을 위한 개별 접촉 시작
(괴산군수 과반수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한 단양우씨 접촉 등)
- 2021. 4.12 : 산업단지 토지보상팀 구성 활동 본격화.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토지편입승락서 개별 송부(주민설명회 없었음)
- 2021.6.14~25일 괴산군 공무원 실국장 등 사리면 방문. 사리면민 회유 및 방문 시작
- 2021.6.17. 괴산군 사회단체장협의회회의 개최
- 2021.6.18. 사회단체장협의회에서 산업단지조성지지 표명
- 2021.7.5. 괴산군 괴산사회단체장협의회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속추진 성명발표
- 2021.7.14~15 사리면 전현직 리우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상인회, 노인회 등 군수실 초청 면담
- 2021.7.16. 괴산군 사회단체장협의회 회원 8명 매립장 현장 견학
- 2021.7.19. 괴산군수 사리면민에게 산업단지개발 협조 서한 발송(1,850가구)
- 2021.7.29. 괴산군, 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알림(설명회 참가자 2명)
- 2021.8월 현재 토지소유자 50%의 토지편입승락을 받지 못해 산업단지승인신청 일정연기.(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주민편입동의 50%를 받아야 하며, 국토부 심의를 거친 후 충북도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임)

=>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지역민에 대한 공식 설명회 없이 진행.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설명 전혀 없었음. 의회에도 보고 안됨.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토지편입승락(50%)을 위해 대토지소유자만 개별 접촉. 지역내 관변 단체 동원 주민분열시도와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려서 토지편입승락받기에 혈안이 됨.

□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자 : sk건설(주), 토우건설(주)
- 2)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방식)
 - 재원구성: 괴산군 12억(101억 배당수익예상), sk 19.5억, 토우건설 10.5억, 교보증권 8억
- 3) 사업기간 : 2019~2026년
- 4) 사업비 : 약 3,253억원(국비 602억 제외)
- 5) 면적 : 1,775,937(약54만평)
- 7) 계획인구 : 종사자 2,948명, 유입인구 1,934명
- 6) 유치업종 : IT 관련(30%), 기타연관업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등) 40%, 유치업종미분류(30%)
- 7) 산업폐기물매립장: 연간 폐기물 2만톤 이상 발생 예상, 면적 2만평, 처리용량 1,940,100㎥, 지하 36.5m, 지상 20m로 계획. 지정폐기물 및 타지역폐기물 포함
 -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부적합 : 대상지역은 금강수계 미호B단위유역에 해당하며 1단계 평가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최근 3단계 목표 수질을 초과하고 있음.
 - ※ 산업단지 미분양율 31%(발효농공단지)

- 업체의 투자의향서에는 유치업종은 그나마 공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 IT 관련 업종이 30%이고, 화학물질, 고무제품 등 기타연관업종이 40%, 매립장 주변에는 업종미분류가 30%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확장을 염두에 두었거나 유해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그림> 개발업체의 투자의향서 업종배치도

3. 문제점

괴산메가폴리산업단지는 돈벌이에 눈이 먼 건설업체와 괴산군이 결탁한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임. 개발업체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돈벌이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사리면민은 땅을 빼앗기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살아야 하며, 괴산군민들은 산업단지과 폐기물매립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함.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점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1) 괴산군의 주민의 알권리 무시 비민주적인 절차

-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음. 심지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매립장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음.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괴산군청 홈페이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는 지역주민이 찾아보기에는 어려웠음.
- 괴산군수는 조속한 산업단지승인신청을 위해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편입 승락을 받기 위해 대토지소유자를 개별접촉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업체가 해

야 할 일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2주간 주민면담을 통한 회유를 지시했고, 괴산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사리면을 고립시키고 민민갈등을 조장하였음. 또한 반대 대책위를 지지한 단체에 재정중단 압박을 가하는 갑질을 보이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을 일삼고 있음.

- 2019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대책위 주장에 괴산군은 지난 7월 29일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여 뒷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8월 현재 괴산 공무원 실과장을 동원하여 토지소유자 대상 토지편입승락서를 받기 위해 주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등의 공개)에 있어 주민 배제
2021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홈페이지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보고서에 보면,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서면 심의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이 중 주민대표의 의견이 허위로 작성됨.

2) 유기농업군 괴산 정체성 상실

- 괴산군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유치할 만큼 유기농업을 기치로 걸고 있는 농업 특화 군이다. 최근 3년 동안 괴산군은 광고예산 중 80%를 농업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함. 그만큼 괴산군은 농업에 주력하고 있는 군으로 공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농업 발전에 더 투자해서 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이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사리면은 증평과 청주 생활권이며,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사통팔달,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정주여건이 쾌적한 증평이나 청주에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며 사리는 허울 좋은 개살구 꼴이 될 것임. 현재 괴산군 공무원들과 산업단지 담당과장도 증평에 거주하고 있듯이 대부분 증평,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산업단지개발로 인해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발전은 커녕 인구증가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유기농업군으로서 정체성만 상실하게 될 것임.

3) 농촌공동체의 파괴로 주민 생존권 위협(농지훼손과 환경오염)

-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고,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임. 또한 대부분 임차농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편입예정인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는 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상지 반경 2km 주변에는 17개의 마을 2천여명의 주민이 26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임. 농업용 소매저수지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백마권역 활성화센터가 있고, 산업단지 남쪽에는 어린이집이 근접해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음. 이곳은 주민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산업단지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공간임.

- 보강천의 발원지인 보광산과 백마산이 있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사리면을 지나 증평군까지도 위협할 것임.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단지 내 소음과 진동은 물론, 폐기물 운반 목적의 대형차량들의 행렬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결국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하고,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각종 공해에서 구하기 위해 주변의 타지역 학교로 옮기게 될 것임.
- 매립장 예정지 옆에는 소매리의 자연환경을 기대하고 입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10여호에 달하듯 최근 소매리 마을들은 귀농귀촌가구가 늘고 있음.
- 결국 논밭을 빼앗긴 농민들은 생명력을 잃고 또한 접근성이 좋은 증평과 청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주민의 증가로 급격한 인구유출로 이어질 것이며, 사리에서 돈 벌어서 증평, 청주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될 것임. 급기야 지역민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업체들이 원하는 공장과 폐기물이 농촌마을을 점령하는 사업이 될 것임.

4)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폐기물매립장 위험성

-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돈은 업체가 벌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침출수, 악취 등의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될 것임.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동일한 업체들이 운영 중인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연간 3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음. 돈독이 오

른 사람들의 눈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유되며 앞으로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하는 이권이 걸려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임.

- 인체에 치명적인 지정폐기물까지 받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유독가스와 침출수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문제가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것임. 민간이 운영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현재 민간업체들의 먹튀로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제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되어 수년간 방치되다가 작년엔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폐쇄시킨 사례가 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가 져야함.

5) 괴산군의 심각한 재정손실과 사업관리능력 부실

- 괴산군은 이미 대제산업단지의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낭비가 우려됨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단지 조성 후 미분양에 대한 빚보증(800억)을 괴산군이 지게 되었다. 본 산업단지도 같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괴산군이 780억의 빚보증을 지며, 업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수익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얻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
- 2020년 재정분석결과 재정건전성, 재정효율, 재정계획성 등에서 괴산군은 충북에서 꼴찌이며 전국에서도 하위권임. 재정면에서 특히 열악한 괴산군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음.
- 괴산발효농공단지 미분양율이 31%이며, 괴산첨단산업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규모가 적어 폐기물매립장은 없으며, 입주업체에 130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유치한 사례임. 대제산업단지는 분양만 100%이며, 입주한 업체는 43%로 가동율이 50%도 되지 않음. 대제산업단지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싼값에 분양하여 최근 3년간 이자상환 및 분양대금차액비 보전 등으로 41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인한 빚보증 등으로 총 15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임.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코로나로 인한 폐업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실패한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미 괴산군은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보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음. 괴산군은 산업단지 기획·관리·운영에 대한 부족한 역량을 보여줌.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 결과>

- 분양책임, 채무보증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협약조건 재협의 등 방안 강구
- 동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규모 축소 조정 및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6) 산업단지 지정 조건 문제

□ 산업단지 신규 지정의 제한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개발지침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서 미분양이 30%를 넘으면 신규지정이 불가함. 괴산군은 이를 위해 기존 미분양용지를 저가로 밀어 내기식으로 분양하여 분양차액을 보전해주는 편법을 쓰고, 농공단지의 경우 20년 이상된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율이 31%로 신규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산업입지 통합개발지침 제11조(산업단지지정의 제한)

2. “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지정면적 중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성 여부(괴산군

괴산메가산단출자설립타당성보고서 p79)

대상지는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는 금강수계 미호B 단위유역에 해당하며, 1단계 평가결과 할당부하량 초과하여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 또한 미호B단위 유역은 최근 3단계 목표 수질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산업입지 통합개발지침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검토기준에 있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선정해야 함.

산업입지 통합개발지침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검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4. 반대 대책위 주요 활동

2020년 10월 괴산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하여 대상지 주변 10개 마을이 모여 편입예정지인 4개 마을 이장들이 공동대책위원장 선출되어 주민 의견 전달을 위한 1차 군수 면담을 시작으로 활동이 본격화되었음. 21년 4월 2차 군수면담을 통해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5월 사리면 26개 마을 이장들과 15개 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괴산메가폴리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됨. 리우회장, 총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 4개마을 이장 등 9명의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됨.

1) 주요 경과

- 2020.10.4 : 사리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결성(10개 마을 이장단)- 4개 마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
- 2020.10.7 : 군수면담 의견서 전달
- 2021.4.28: 산업단지조성 반대의견전달을 위한 2차 군수 면담
- 2021.5.12: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 구성(리우회장 및 총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농단협회장, 4개 마을 이장 등이 공동대책위원장)
- 2021.5.18.: 괴산군의회 항의 방문. 주민의견서 전달.
- 2021.6.2.: 환경운동연합주관, “산업폐기물 공공성 포기하고 기업특혜 주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참여.
- 2021.6.3 산업단지 백지화를 위한 괴산군청앞 1인 시위 시작
- 2021.6.8.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추진위 사무실 개소식
- 2021.6.16. 대책위 주관 지역연석회의개최(14개 단체)

- 2021.6.21. [기자회견] 주민참여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 촉구
 - 2021.6.28. [초청강연]하승수와 함께하는 농촌지역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100여명 참석
 - 2021.7.6. 백지화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2021.7.7. 산업단지 반대 이유 등 마을별 설명회 개최(사담, 대기, 중흥, 응암)
 - 2021.7.29. 괴산군수 서한/홍보물 반송 및 반박문 전달
 - 2021.8.10 사리면 27개 중 24개 마을이장단 집단 사퇴, 1,248명 반대서명용지 군수전달
 - 2021.8.12.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명 전원사퇴
 - 2021.8.16. 산업단지 토지편입반대동의 서명받기
 - 2021.6.3.~ 현재까지 군청앞 1인 시위 64일차 (사리면민 약 100여명 참가)
- => MBC, KBS, CJB 등 지역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음.

2) 주요활동

□ 의견서 전달 : 괴산군수(20년 10월 7일, 21년 4월 28일), 괴산의회(5월 18일)



□ 기자회견

-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주관 산업폐기물 공공성 포기하고 기업특혜주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참여



- 2021년 6월 21일 괴산군청앞,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 주관 “주민 동의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산업단지 백지화 촉구 1인 시위(2021년 6월 3일 ~)



□ 초청 강연회(21년 6월 28일) “하승수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촌지역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 괴산군수 서한 반송 및 반박문 전달 (21년 7월 29일)



- 사리면 이장단 집단 사퇴, 1,248명 백지화촉구 반대서명서 군수 전달(21년 8월 10일)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명 전원 사퇴(21년 8월 12일)



5. 마무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는 산업단지가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대내외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역단체와의 연대, 더 나아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문제를 공유하고 힘없는 농촌지역이 일부 그릇된 행정가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국적인 의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정토론 1

하승수 대표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지정토론 2

괴산군 경제과

지정토론 3

진천군 투자전략실

부록

유엔농민권리선언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제3차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A/73/589/Add.2)]

73/165.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총회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8년 9월 28일의 39/12 결의안 내에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1. 본 결의안의 부속서에 포함된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며,
2. 정부, 유엔 산하 기관 및 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가 이 선언의 내용을 전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이해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며,
3. 인권: 국제 법률 문서 모음 (원제 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차기 판본에 선언문을 포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2018년 12월 17일 55차 본회의

부속서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유엔 총회는,

자유, 정의 그리고 세계 평화의 기초인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평등하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노동기구 및 기타 유관 국제기구에 의해 세계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채택된 관련 규약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며,

발전권은 모든 개인과 모든 형태의 집단들이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자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과 발전권 선언을 재확인하며,

유엔 원주민권리선언 또한 재확인하며,

나아가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라는 점과 동일한 바탕 위에서 그리고 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증진·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권리를 증진·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결코 면제되지 않음을 상기하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림살이를 의지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토지, 물, 자연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전 세계 각 지역의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먹거리와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 그리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등 국제적으로 합의한 발전 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적절한 먹거리와 먹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또한 인정하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 기아, 영양실조로 더 많이 고통 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 농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촌 생활이 고되고 유인이 부족해 청년들은 점점 더 농업을 등지고 도시로 이주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특히 농촌 청년들을 위해 농촌 경제를 다양화하고 자신의 농장 활동 외에서도 소득을 얻을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강제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이주하는 농민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농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도 경각심을 갖고,

여성 농민과 농촌 여성이 비화폐적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촌 및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토지 이용권 및 소유권을 비롯해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또는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는 폭력 및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농촌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따라, 빈곤, 기아 및 영양실조를 퇴치하고, 양질의 교육 및 건강을 증진하며,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노출에서 보호하며, 아동노동을 근절함으로써 농촌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소규모 어민 및 어업 노동자, 목축민, 임업인, 여타 지역공동체를 포함하여 농민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인권과 토지 점유권을 지키고, 그들이 의지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등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있을 강조하며

농촌 사람들의 토지, 물, 종자,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권 개선과 적절한 농촌 발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연적인 과정과 순환을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어머니 대지라고 부르는 자연을 옹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을 촉진하고 실천하려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지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세계 곳곳에 위협하고 착취적인 환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

할 기회를 빈번히 거부당하고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가 결여된 채 일해야만 하는 농민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점을 고려하며,
토지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기관, 단체 및 개별 활동가들이 신체적 안위에 대해 여러 형태의 위협과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법원, 경찰관, 검사, 변호사 등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학대나 착취로부터 즉각적으로 구제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먹거리 생산물 투기, 먹거리 체계에서 집중의 심화, 분배의 불균형, 가치사슬 내 불균등한 역학 관계 등이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발전에 각 개인과 모든 형태의 집단이 참여하고 기여하며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발전권은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모든 자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집단들이 갖는 권리를 상기하고,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그들의 먹거리와 농업체계를 규정할 권리를 명시하는 데,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생태적으로 올바르게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데 식량주권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본 선언과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증진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 대화, 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노동 보호와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자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광범위한 협약 및 권고사항을 상기하며,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도 상기하며,
더 나아가 먹거리 권리, 토지 이용 권리, 천연자원 접근 권리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토지·어장·삼림 이용권 관련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먹거리 보장과 빈곤 퇴치 차원의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 보존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국가 먹거리 보장 차원의 적절한 먹거리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지원하는 자발적 가이드라인 등에서 다루는 농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및 세계식량보장위원회의 방대한 작업을 상기하고,
농업개혁과 농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의 전반적 발전 전략에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농업개혁 및 농촌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와 농민헌장을 상기하며,
본 선언 관련 국제협정은 인권보호 강화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국제협력과 연대의 노력을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권 실현에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려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실천에 새롭게 전진할 것을 결의하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을 선언한다.

제1조

1. 본 선언에서 농민이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 그리고/또는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족 또는 가사 노동 및 비화폐적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하며, 토지와 땀 수 없이 특별히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선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작물 재배, 축산, 목축, 어로, 영림, 수렵 또는 채집, 농업과 연관된 수공업 또는 농촌 지역에서 유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3. 본 선언은 또한 땅을 기반으로 일하는 원주민과 지역공동체, 이동방목자, 유목 및 반유목 공동체, 그리고 앞에 언급한 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더 나아가 본 선언은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플랜테이션, 농장, 산림, 수산양식장, 농산업체의 농장에서 일하는 고용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1.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본 선언의 권리 중 국가가 즉각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행정이나 기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여러 형태의 차별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본 선언의 이행에 있어 노인,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을 포함해 농민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특별한 필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원주민에 관한 특별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및 정책, 국제협정, 기타 의사결정 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국가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선의를 가지고 상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대표기관들은 의사결정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지를 구하며, 그들의 기여에 대응하고,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고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연관된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우며, 효과적이고, 유의미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보장한다.
4.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인권 의무와 마찬가지로 관련 국제협정 및 기준의 당사국으로서 그 협정과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5. 국가는 개인과 민간 단체, 초국적 기업, 기타 사업체 등 국가가 규제 가능한 비국가 행위자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해야 한다.

6. 국가는 본 선언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간 그리고 관련 국제 및 지역 단체와 시민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에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국제개발계획 등 관련 국제 협력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관련이 있도록 보장하는 것
 - (b) 정보, 경험, 교육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환 및 공유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
 - (c) 과학·기술 지식의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하는 것
 - (d)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상호 합의한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적절한 기술·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공유하는 것
 - (e) 식량 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투기 유인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 정보 등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

제3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² 및 그 밖의 모든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출신,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언어, 문화, 혼인 여부, 재산, 장애, 나이,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종교, 출생 또는 경제·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떠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하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야기하거나 영속시키는 조건들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그들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며, 농촌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본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 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a) 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시 모든 단계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
 - (b) 적절한 보건 시설, 가족계획 관련 정보, 상담 및 서비스 등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 (c)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권리

- (d) 기능적 문해 관련 교육 및 훈련 등 모든 종류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와 기술적 숙련도 향상을 위한 모든 종류의 공동체 및 순회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 (e) 고용 또는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기회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조단체, 연합 및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 (f) 모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
- (g) 금융 서비스, 농업신용 및 대출, 판매 시설 그리고 적절한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 (h) 토지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동등한 접근권, 토지개혁 및 농업자원과 체제개혁과 토지 재정착 정책에 있어 동등하게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 (i) 보람 있고 인간다운 일자리, 동등한 보수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권리와 소득 창출 활동에 접근할 권리
- (j)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제5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 선언 제28조에 따라 적절한 생활 여건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 내 자연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이러한 자원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 아래 항목들에 근거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게 허용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 (b) 본 선언 2조 3항에 따라 신의에 입각하여 협의한 경우
 - (c)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농민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 상호 동의 하에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된 경우

제6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생명, 신체·정신적 온전성,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의체포 또는 구금,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노예 또는 노역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제7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필요시 본 선언의 28조에 따라 국가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 신념, 양심, 종교, 의견, 의사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구두, 서면 또는 인쇄물로, 예술의 형태 또는 자신이 선택하는 기타 언론을 통해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그리고/또는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에는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을 존중하기 위한 경우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모든 종류의 폭력, 위협, 보복,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차별, 억압 또는 기타 임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해당 당국에 의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 교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조직 및 결사체를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직은 그 성격상 독립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간섭, 강압 또는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법률로 정한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공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국가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 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결성, 성장 그리고 적법한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해당 조직 또는 그 회원에 대한 입법 또는 행정적 차별 등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러한 조직의 결성을 장려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상의 조건을 협상할 때 공정하고 안정적인 조건과 가격을 보장하고 존엄성 및 삶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직접 그리고/또는 대표 단체를 통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삶, 토지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그리고/또는 대표 단체를 통해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설립과 성장을 존중하는 것,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단계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1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찾고, 받고, 발전시키고 나눌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신장하고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 부합하는 언어, 형식 그리고 방식을 통해 유관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체단체,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생산물 품질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평가 및 인증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를 장려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과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비차별적인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에 관해 국제 인권법 관련 의무를 준수하며 그들의 관습, 전통, 규정 및 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국가는 공정하고 권한 있는 사법 및 행정기관을 통해 당사자의 언어로 효율적이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항소, 원상회복, 구상, 보상 및 피해배상의 권리 등 실질적이며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행정 및 사법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4. 국가는 본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토지와 자연자원을 임의로 수탈하거나 생존수단 및 온전성을 빼앗고,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정주 또는 이주를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지니는 모든 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계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권을 가진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위협성을 가지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 또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해로운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충분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 제공되는 일을 할 기회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농촌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타 분야에 고용될 기회가 부재한 국가의 경우,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국가는 소규모 농업과 영세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노동 감시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노동법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6. 그 누구도 강요된, 예속된, 강압적인 노동을 요구 받아서는 안 되며,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판 노예제에 놓여서는 안 된다.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이들의 대표단체와 협의 및 협력하여 경제적 착취, 아동 노동 그리고 여성, 남성 및 아동에 대한 채무구속 노동, 어민과 어업노동자, 임업 노동자 또는 계절 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등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 계절 또는 이주 노동자 등 자신의 상태와 상관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 및 건강대책의 적용 및 검토 단계에 참여할 권리, 안전 및 건강 관련 대표자와 안전 및 건강위원회 대표를 선정할 권리, 위해 및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관리할 대책을 적용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의류 및 장비에 접근하고 직업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 성추행을 비롯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업무환경을 보고할 권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요소가 있다는 합리적 판단이 들 경우 업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어떠한 업무관련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농약이나 농업 또는 산업 오염물질 등 유해물질 또는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또는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안전하며 건강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책임 당국을 지정하고 농업, 농산업 그리고 어업 분야의 직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책의 이행과 국내법 및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분야간 공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시정조치와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농촌 작업현장의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기술, 화학물질 및 농업 관행에서 비롯되는 건강 및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예방조치

- (b) 농업용 화학물질의 수입, 분류, 포장, 유통, 정보표시 및 화학물질 이용에 관한 기준, 해당 화학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차원의 체계 또는 관계 당국이 승인한 기타 체계
- (c) 농업용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송, 보관 또는 처리하는 당사자가 국내 또는 기타 안전 및 건강 기준을 준수하며, 적절한 공식 언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화학물질 이용자와 요청 시 관계 당국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d) 화학 폐기물, 폐화학물질, 화학물질 공병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안전하게 수집, 재활용, 처리하는 적절한 체계 마련
- (e) 농촌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에 관한 교육 및 공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제15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와 충분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신체·정서·지적인 상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접근권을 보존하면서, 이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생산, 소비되는 충분하고 적절한 먹거리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면서 개인 그리고/또는 공동체로서 신체·정신적으로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3. 국가는 기초보건의 틀 내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을 갖춘 먹거리의 제공과 임신부 및 수유기 여성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보장하여 농촌 지역 아동 영양실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영양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받고, 아동 영양과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할 때 지원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식량주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먹거리 및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먹거리 및 농업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는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5.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먹거리 보장 및 식량주권과 본 선언이 담고 있는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의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 경제, 사회, 문화 및 발전 정책과 본 선언이 담고 있는 권리의 실현 사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도구, 기술 지원, 신용,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또한 자유롭게, 개인적 그리고/또는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통적인 농업, 어업, 축산, 임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 기반의 상업화 체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입과 생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 국내 및 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운송수단과 가공, 건조, 저장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그 가족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생산물을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국내 및 지역내 시장에 완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강화하고 지원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는 농촌개발, 농업, 환경, 교역, 투자 정책 및 사업이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농생태학적 유기농 생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독려하고, 농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 및 시장실패와 같은 심각한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국가는 동등한 노동 가치에 대해 어떤 형태의 차별 없이 공정한 임금과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 선언 28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그리고/또는 집단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공간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와 수자원, 연안해역, 어장, 목초지 및 삼림에 접근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권리를 비롯,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혼인상태의 변화, 법적 능력의 결여 또는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 결여 등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포함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토지이용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사례와 체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현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습적 토지이용권을 포함한다. 국가는 적법한 이용권을 보호해야 하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또는 불법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가 다른 방식으로 소멸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자연 공공재 및 이와 관련된 체계의 공동 사용 및 관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4.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 거주지 또는 적절한 생활여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활동에 이용되는 자연자원으로부터 임의, 불법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

호밭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내법이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에 일관되도록 강제이주로 부터 보호받을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징벌적 조치 또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해 임의·불법적 강제 추방, 농지 파괴, 그리고 토지 및 자연자원의 임의적인 몰수 또는 수탈을 금지해야 한다.

5. 임의·불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빼앗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또는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든지 한 공동체로든지 자연재해 그리고/또는 무장 분쟁의 경우를 포함해 임의·불법으로 빼앗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언제든지 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데 필요하고 활동에 사용한 자연자원을 다시 활용하도록 하고,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때는 공정하고 적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적절한 경우, 국가는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여건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토지의 과도한 집중과 통제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자연자원예의 광범위하고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자원 및 체계 개혁을 단행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토지, 어장 및 삼림은 무토지 농민, 청년, 소규모 어민 및 농촌노동자들에게 우선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국가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자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여 농생태학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생물학적 역량 및 자연적 역량과 주기를 재생시키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용·관리하는 자원, 토지의 생산력, 환경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을 누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습적 농법과 전통적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권리가 있다.
4. 국가는 어떠한 위험물이나 폐기물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토지에 매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피해로 인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환경법 시행 등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가 자행하는 폭력으로부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 선언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자권을 가진다.

- (a)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보호할 권리
 - (b)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활용에 따르는 이익 공유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
 - (c)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d)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 물질을 보관, 활용, 교환 및 판매할 권리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자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는 농민들이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양질의 종자를 파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나 농민들의 선택으로 지역공동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에 의존하고, 농민들이 재배하고 싶은 작물과 품종을 결정할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국가는 농민종자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종자의 사용과 농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국가는 농업 연구개발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험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 우선순위 선정과 이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작물 및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품종 보호 및 지식재산법, 인증 체계, 종자 판매법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요구 및 현실을 존중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1. 국가는 해당 국제의무에 따라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완전한 권리 실현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고갈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련된 전통적 농업, 유목, 임업, 어업, 목축 및 농생태적 체계를 포함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 혁신 및 실천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그 어떠한 유전자조작 유기체의 개발, 처리, 운송, 활용, 이송 또는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요소를 예방해야 한다.

제21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고 모든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는 질적으로 양호하며, 적정 가격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문화와 젠더 차원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체계와 위생 시설을 포함한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자원의 보존, 회복,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받으며 개인 및 가정용, 영농, 어로, 목축을 위한, 그리고 기타 물과 관련된 생활을 위한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물과 물 관리 체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수질 오염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습과 공동체에 기반한 물 관리 체계를 포함해 차별을 두지 않고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보장해야 하며, 개인, 가정 및 생산용 수자원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특히 농촌의 여성과 소녀 및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이민법상 신분과 상관없는 모든 이주민과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혜택을 못 받고 주변화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개선된 위생시설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관개기술, 하수처리 재사용 및 집·저수 기술 등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기술을 증진해야 한다.
4. 국가는 특히 느리고 빠르게 독성을 낳는 산업폐수 및 농축 미네랄과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과 수자원 남용으로부터 산지, 삼림, 습지, 하천, 암반 및 호수 등 물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5. 국가는 제삼자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국가는 수자원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진하면서, 다른 용도에 앞서 인간의 필요에 따른 수자원 활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농촌지역의 모든 이주 노동자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사회 보험을 비롯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국내 상황에 따라 기초사회보장 체계로 구성된 사회 보호기반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는 적어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생애주기에 걸쳐 필수 의료서비스 및 기초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4. 기초사회보장은 법에 의거하여 마련해야 마땅하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실질적이고,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고충과 진정 절차 또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게 마땅하다. 국내법 체계 준수를 강화하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제23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체·정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회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용 동식물과 미네랄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비롯해 전통 의약품을 활용하고 보전할 권리와 그들만의 건강요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비차별 원칙에 기반해 특히 취약계층에게 농촌지역의 보건 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필수 의약품,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출산 관련 보건, 각종 예방 및 치료 방법 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건 문제에 관한 정보, 모자보건, 건강과 인권에 관한 교육 등 보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권을 갖는다. 그들은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유지할 권리와 이 맥락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삶터에서 강제추방, 괴롭힘 및 기타 위협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임의로나 불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 적절한 형태의 법적 또는 보호 없이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삶터나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강제 이주가 불가피 할 경우,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 혹은 그 밖의 손실에 대해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농생태적,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환경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산성 향상, 시장판매, 해충, 균, 먹거리 체계 쇼크, 화학물질 효과, 기후변화 및 기상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는 능력 등이 교육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는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고 인권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과제와 부상하는 과제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민현장학교, 참여형 식물육종, 동식물 진료소와 같이 농부와 과학자 간 동등하고 참여적인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4. 국가는 농가 수준에 맞는 교육훈련, 시장 정보 그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의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생활방식, 생산방식이나 생산기술, 또는 관습과 전통을 비롯해 전통지식과 토착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국제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문화적 권리를 들 수 없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그리고/또는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한 공동체로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그들의 지역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그리고 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 관행 및 기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1. 유엔 체계 내 상설전문기구, 기금 및 사업을 위한 기구와 국제적, 지역적 금융기구를 비롯한 기타 정부 간 기구는 특히 개발원조 및 협력 등의 방식을 통해 본 선언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2. 유엔과 유엔 상설전문기구, 기금 및 사업을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정부 간 기구는 국제적, 지역적 금융기구를 비롯하여 본 선언을 존중하고 완전히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그 효과를 후속 관리해야 한다.

제28조

1. 본 선언의 어떤 내용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획득할 권리를 축소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무효화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본 선언에 표명된 권리의 행사는 오직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는 법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차별 요소가 없어야 하며,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하고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어야 한다.